

기업 지배구조헌장

삼호개발주식회사

제정일 2022.07.22.

전문

삼호개발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)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지향한다. 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주주, 고객, 협력사, 임직원,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제고하며,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.

제1장 주주

제1조 [주주의 권리]
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,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등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.
- ② 정관의 변경, 합병, 영업 양도, 기업의 분할, 해산 등 회사의 존립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,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2조 [주주의 공평한 대우]

-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고,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.
- ② 모든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.
- ③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
제3조 [주주의 책임]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4조 [이사의 기능]

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, 방침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진의 회사 운영을 감독 및 지원한다.

제5조 [이사의 구성]

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제6조 [이사의 선임]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7조 [사외이사]

-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진을 감독·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회사와 지배주주와 중대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이어야 한다.

제8조 [이사의 운영]

- ①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
-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9조 [이사의 의무]

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 [이사의 책임]

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.

제3장 감사

제11조 [내부감사]

-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하며,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②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 [외부감사]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 중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내부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13조 [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]

- ① 회사는 주주, 고객, 협력사, 임직원,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한다.

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4조 [기업경영권시장]

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의 경영권 변동은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며 기업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제15조 [공시]

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.